

토지매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일		처리기간 (매수판정)		5년 (3개월)	
신청인	성명								
	생년월일					전화번호			
	주소								
토지에 관한 사항	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용도지구	이용현황		
관계되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	번호	종류	지상권·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						
			설정기간	잔존기간	담보(한도)액	지대 (연액: 원)	권리자	특기사항	
매수청구 사유									
「자연공원법」 제7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 의 매수를 청구합니다.									
신청인 귀하									
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									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							수수료 없음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2. 토지이용계획확인서								

처리절차

[처리기관]

- 국립공원: 기후에너지환경부
- 도립공원: 시·도
- 군립공원: 시·군·구

※ 법 제8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처리기관이 됩니다.

